

[별표 2의2] <신설 2018. 5. 21.>

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(제39조 관련)

감면 대상 사업	감면비율(퍼센트)
1. 생태·경관보전지역(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생태·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	100
2.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	50
3.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	100
4.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	100
5.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사업	100
6. 「습지보전법 시행령」 제8조제3호에 따른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	100